

<p>智 仁 勇 진 리 탐 구 사 랑 실 천 정 의 실 현</p>	 <p>전주신흥고등학교</p>	 <p>United Nations Educational,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sation</p>  <p>UNESCO Associated Schools</p>	<p>교무실 232-7072~3 보건실 232-7074 http://shmission.hs.kr</p>
--	---	---	--

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른 기본방역수칙안내

학부모님, 안녕하십니까?

학사운영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방역에 협조해 주신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7월 1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가 개편되었습니다. 그러나 수도권은 여전히 확진자가 급증하여 기존 거리두기를 1주일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
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월 2일 0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국내발생 765명, 해외유입 61명으로 발표하였습니다. 시험이 끝나고 긴장감이 풀어지면서 마스크착용 등 방역수칙도 헤이해 질까 염려가 됩니다. 다중시설 이용 및 여행 자제를 당부드립니다.

1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

▷적용대상 시설.업종: 전라북도 전역

▷적용기간: 2021년 7월 1일 0시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

- 전주 군산 익산 완주(혁신도시)이행기간: 2021. 7. 1. 0시~ 7. 14. 24시

▷제한사항: 전주.군산.익산. 완주(혁신도시)는 **이행기간 동안(2주간)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**

▷법적근거: 감염병예방법 제 49조 제 1항 각호

2 가정 및 학교에서의 방역수칙 준수

▷ 기본 방역수칙 충실 이행 : 최소한의 사회적 거리두기, 손소독, 마스크 착용 등

▷ 실질적인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

- ① 학생 본인은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아래의 임상증상이 있나요?
- ② 학생 본인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나요?
- ③ 학생 본인 또는 동거인이 방역당국에 의해 현재 자가격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?

=> 이 세 가지 항목 중에 **하나라도 '예'로** 응답이 되는 경우 **'등교중지'**로 안내됩니다.

▷ 의심증상 발현 시 등교중지 후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단검사 실시

▷ 의심증상 발현 시 학원 등원 중단, 수강 시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철저

▷ **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음에도 등교를 원하는 경우**

→ 아래 **3가지 중 1가지 서류를 제출**해야 합니다.

(예시) 선생님!! 저는 어렸을 때부터 비염이 있어요. 두통, 콧물 있지만 등교하고 싶어요.

- (1) 증상의 원인 질환이 20.1.20. 이전부터 있었다는 의사소견서 등
- (2) 해당 질환이 코로나 19와 관계없으며 타학생 감염우려가 없다는 내용이 적힌 의사 소견서 등
- (3) 위 1,2번 불가 시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(검사실시 여부와 무관) + 현재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서

기본방역수칙의 의의

- (기본방역수칙이란?) 코로나19의 장기유행에 따라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, 다중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 단계 구분 없이 관리자·종사자·이용자가 함께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뜻함
 - * 모든 단계에 적용하여 감염 위험요인을 감소, 안전한 시설 환경 조성
 - ※ 거리두기 단계 또는 특별방역대책으로 강화·추가되는 방역조치가 있는 경우, 강화·추가된 방역조치를 준수

- (기본방향) 시설별 수칙 외에도 모든 시설은 공통수칙을 적용 권고
 - 공통수칙 : 모든 시설 적용 (자유업종, 기타 미등록 시설 등은 유사업종 참고)
 - 시설별 수칙 : 각 시설에 적용 (부대시설도 각 시설별 수칙 적용)
 - * 공용공간 : 시설 내 공용공간에 공통 적용

- (구성) 공통수칙(10개 필수 방역수칙), 추가수칙(시설별 특성 반영한 수칙)
 - (공통수칙) 방역수칙 안내, 출입자 증상확인, 출입자 명부작성, 마스크 착용, 손 씻기, 음식섭취 금지(일부 시설 제외), 밀집도 완화, 일 3회 이상 환기, 주기적 소독, 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
 - * 중앙방역대책본부 「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(제3판)」 및 「코로나19 수기명부 관리 지침(‘21.4.8)」 준수
 - (추가수칙) 공용공간 및 부대시설 이용, 비말행위(소리지르기, 노래부르기 등) 금지, 테이블 간 이동금지 등

- (위반) 기본방역수칙 내용을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, 관련 협회·단체에 안내하여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
 - 시설의 고의성,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

코로나19 특성 및 위험요인

□ 사람이 모이는 곳은 어디에서나 코로나19 감염위험 상존

- 다중이용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방문하고, 밀집·밀폐·밀접접촉이 발생하는 행위로 인해 감염 전파·확산 가능성이 높음
- 집단발생 시 수퍼 전파(superspreading event) 가능성을 예방하고 감염발생 시에도 밀접접촉의 규모를 최소화하며, N차 감염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

□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된 감염 위험행동 및 환경은 다음과 같음

(1) 위험 행동

-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행동 (음식·음료·주류 섭취, 목욕, 관악기 연주 등)
- 이용자 체류시간이 길고 취식 동반 (음식점, 라이브카페, 노래교실, PC방)
- 노래·응원 및 격렬한 신체움직임으로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 (노래, 환호·응원 등 소리지르기, GX류 운동)
- 마스크 미착용 또는 불완전 착용 (태권도장, 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)
- 소모임 등을 통한 밀접 접촉 (종교시설, 지인모임, 동호회 등)

(2) 위험 환경

- 3밀(밀폐, 밀접, 밀집) 환경에서의 공동생활 및 작업(사업장 등)
- 지하에 위치하거나, 창문이 없거나 있더라도 시설규모에 비해 수가 적고 크기가 적은 등 환기 불량(탁구장, 노래방, PC방, 라이브카페),
- 공동 물품에 대한 소독 미흡(물류센터 사업장 등)
- 거리 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
- 부실한 출입자명부 작성관리로 이용자 관리(추적)가 어려움
- 탈의실, 샤워실 등 공용 시설 및 물품 이용 등 (사우나, 사업장의 휴게실 등)

개인 방역수칙

□ 개인방역 5대수칙

- 입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 착용하기, 2m(최소 1m) 거리 두기
- 아프면 검사받고,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
- 30초 손 씻기, 기침은 옷소매에
-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, 주기적 소독
- 직장동료, 함께 사는 가족을 제외한 지인과는 비대면으로 만나기

□ 상황별 주요 수칙

(1) 일할 때

- 아프면 출근하지 않기, 증상 있으면 즉시 퇴근
- 재택근무, 유연근무, 휴가 적극 활용 및 회의·출장은 가급적 **영상회의**
-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에서 상시 마스크 착용, 음식 섭취 자제
- 공용물품 사용하지 않기

(2) 식사할 때

- 식사는 짧게, 대화 자제, 먹지 않을 때는 마스크 쓰기
- 지그재그 앉거나 한 방향으로 앉기, 한 칸 띄우기
- 혼잡한 식당 피하고, 포장·배달 활용하기, 개인 접시 덜어 먹기

(3) 운동할 때

- 가급적 야외에서 혼자 운동하기, 실내 운동 시 마스크 쓰기, 2m(최소1m) 거리 두기
- 개인 물품 사용 (개인 컵, 매트 등), 탈의실 등 공용공간 피하기
- 운동 전·후 모임, 음식 섭취하지 않기
- 신체접촉이 있는 운동, 마스크 지속 착용 어려운 격렬한 운동 자제하기

(4) 공동 생활할 때

- 가급적 1인 1실 사용하고, 침대 간 2m(최소 1m) 거리 두기 유지
- 공용공간에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대화 자제, 정해진 장소 외 취식 금지
- 손이 많이 닿는 곳은 매일 표면 소독
- 외부인 방문이나 만남 자제, 아프면 검사받기

2021. 7. 2.

전주신흥고등학교장(직인생략)